

체당금신청

제도 개요

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,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(임금채권보장제도)

지급 사유

- **사실상 도산** :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한 경우
 - ※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 부터 1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여야 함
- **재판상 도산** : 법원이 파산선고,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한 경우

지급 요건

- **사업주** :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사업을 한 후에 도산한 경우
- **근로자** : 파산선고 등이나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

지급액

- 최종 3월분의 임금(휴업수당 포함)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
- 다만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최대 1,800만원까지 지급
 - ※ 월경 상한액(임금, 퇴직금) : 30세 미만 180만원, 30~40세 미만 260만원, 40~50세 미만 300만원, 50~60세 미만 280만원, 60세 이상 210만원

청구 방법

기업의 도산인정일(파산선고등)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청구

부정수급에 대한 처벌

- ▶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
 - ※ 부정수급신고서 포상금 지급(각 지방고용노동관서)

그 밖에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들

생계비 대부(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제2항)

- **대부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체불 근로자**
 - 근로자 1인당 1,000만원 범위 내 임금체불액
 - 연리 3%,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
 - ※ 신청기관 :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(대표전화 : 1588-0075)

체불사업주 용자제도(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외2)

-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,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용자를 통해 퇴직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제도

지원요건

-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300인 이하 산재보험 적용대상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하여야 함
- 사업주가 근로자의 체불금액을 용자(1사업주당 최저 1백만원~최고 5천만원,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)
- 담보제공시 연리 3.0%, 신용용자시 연리 4.5%,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
- ※ 신청기관 :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(대표전화 : 1588-0075)

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연대책임 확대

- **도급사업의 경우 하수급인이 직장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장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짐**
 - 이 경우 직장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상위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수급인에게도 연대책임 부과('12.8.2.시행)

건설업 불법하도급시 임금지급 연대책임(근로기준법 제44조외2)

-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장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
 - ※ '08. 1. 1 이후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'08. 1. 28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체불부터 적용

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

지방고용노동관서 전국 전화번호

기관명	행정업무전화	상담전화
서울지방고용노동청	02 2231-0009	
· 서울강남지청	584-0009	
· 서울동부지청	403-0009	
· 서울서부지청	713-0009	
· 서울남부지청	2639-2110	
· 서울북부지청	950-9880	
· 서울관악지청	3281-0009	
중부지방고용노동청	032 460-4545	
· 인천북부지청	540-7910	
· 부천시청	714-8700	
· 의정부지청	877-0009	
· 고양지청	931-2800	
· 경기지청	259-0203	
· 성남지청	788-1505	
· 안양지청	463-7303	
· 안산지청	486-0009	
· 평택지청	617-9010	
· 강원지청	033 258-3551	
· 강릉지청	650-2500	
· 원주지청	769-0800	
· 태백지청	552-0009	
· 영월출장소	374-0009	
부산지방고용노동청	051 853-0009	국번없이 1350
· 부산동부지청	559-6688	
· 부산북부지청	309-1519	
· 창원지청	055 239-6500	
· 울산지청	052 272-0009	
· 양산지청	387-0009	
· 진주지청	752-0009	
· 통영지청	645-0009	
대구지방고용노동청	053 667-6200	
· 대구북부지청	605-9000	
· 포항지청	054 271-6700	
· 구미지청	450-3500	
· 영주지청	639-1111	
· 안동지청	851-8000	
광주지방고용노동청	062 975-6200	
· 전주지청	063 240-3400	
· 익산시청	839-0009	
· 군산시청	450-0510	
· 목포지청	061 280-0100	
· 여수지청	650-0109	
· 제주	064 728-6100	
대전지방고용노동청	042 480-6293	
· 청주지청	043 299-1131	
· 충주지청	843-0009	
· 천안지청	041 560-2800	
· 보령지청	931-6640	

상담전화 국번없이 132

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전화번호

기관명	행정업무전화	기관명	행정업무전화	상담전화
본부	02 532-0132	고령지소	956-5132	
법문화교육센터	054 432-6812	안동출장소	856-2595	
서울중앙지부	02 3440-9503	영주지소	634-0338	
서울파산센터	3482-1766	경주출장소	775-5553	
서울동부지부	453-0708	김천출장소	433-1780	
서울남부지부	2646-6117	상주출장소	535-3277	
서울북부지부	973-3732	예천지소	652-0568	
서울서부지부	713-6039	문경지소	552-0701	
의정부지부	031 876-0954	의성출장소	833-5402	
포천지소	531-5304	청송지소	873-3676	
가평지소	581-0053	영덕출장소	734-1745	
고양출장소	903-5132	울진지소	782-3676	
철원지소	033 452-0677	영양지소	682-3676	
인천지부	032 874-3374	포항출장소	251-6111	
부천출장소	325-5387	부산지부	051 505-1643	
수원지부	031 213-0773	부산파산센터	505-1671	
성남출장소	748-6177	부산동부출장소	781-0710	
여주출장소	884-7640	울산지부	052 257-4676	
평택출장소	656-9144	창원지부	055 266-3381	
안산출장소	482-2769	마산출장소	247-7341	
안양출장소	382-6373	함안지소	584-4676	
춘천지부	033 251-8301	의령지소	574-4676	
인제지소	463-4676	진주출장소	755-6922	
양구지소	482-1320	하동지소	884-4670	
화천지소	442-6755	사천지소	835-1666	
강릉출장소	645-3163	남해지소	863-6038	
삼척지소	576-0620	산청지소	974-3386	
동해지소	534-3195	통영출장소	649-1830	
원주출장소	748-0763	고성지소	673-4636	
횡성지소	343-1320	밀양출장소	356-5131	
속초출장소	636-8511	거창출장소	942-8436	
영월출장소	373-1910	함천지소	934-1315	
정선지소	562-1320	함양지소	963-9029	
태백지소	552-3066	광주지부	062 224-7806	
평창지소	335-1320	광주파산센터	224-7808	
대전지부	042 472-9061	나주시소	061 334-7805-6	
홍성출장소	041 634-4476	화순지소	375-7806	
서천지소	952-0372	목포출장소	277-2002	
보령지소	931-0518	영암지소	473-7806	
예산지소	333-9134	무안지소	454-7806	
공주출장소	857-6132	장흥출장소	863-8856	
청양지소	942-9758	강진지소	430-3880	
논산출장소	745-4478	순천출장소	725-8121	
부여지소	832-9932	보성지소	852-7804	
서산출장소	667-4054	고흥지소	835-7806	
당진지소	352-3957	해남출장소	536-9945	
천안출장소	563-6174	완도지소	555-1164	
창주지부	043 286-4451	진도지소	542-7132	
괴산지소	833-2132	전주지부	063 251-4034	
진천지소	532-5132	진안지소	432-1345	
충주출장소	854-0402	김제지소	542-5028	
음성지소	872-2132	무주지소	323-3254	
제천출장소	646-5011	군산출장소	452-6696	
영동출장소	744-9600	정읍출장소	533-9644	
대구지부	053 743-1321	부안지소	584-5080	
대구파산센터	756-1801	고령지소	564-5280	
서부출장소	561-0069	남원출장소	626-5789	
철곡지소	054 976-5132	장수지소	353-1345	
성주지소	932-5132	제주지부	064 753-9955	

▶ 화상전화번호 : 070-7947-7132



체불임금 해결을 도와드립니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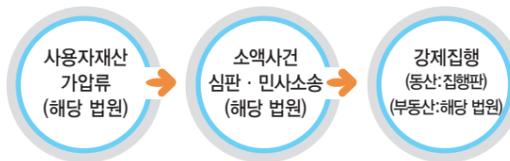
2014. 1

밀린 임금을 받는 방법

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이용

- ▶ **진정·고소** : 사전상담을 한 후에 결정
 - * 진정 :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
 - * 고소 :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
- ▶ **체당금 신청** : 회사가 도산한 경우

민사소송 이용 → 무료법률구조지원 (월소득 400만원 미만)



필요한 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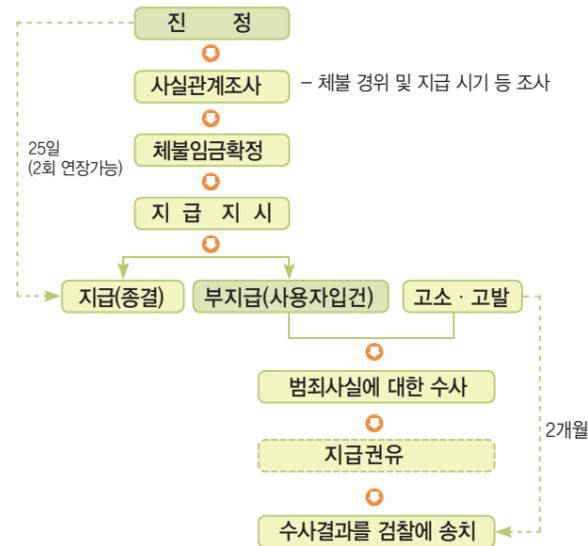
- **사업주 관련**
 - 성명(법인명 및 법인대표자)
 - 주소(주민등록번호)
 - 전화(휴대전화)번호
 - 사업장소재지, 상사근로자수, 사업종류(생산제품)
- **밀린임금액**
 - 임금 지급명세서(임금봉투), 임금 지급받은 예금통장(사본) 등
- **재산보유현황** (민사소송시 필요)
 - 회사제품의 납품처 등
 - 사업주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
- **기타 유용한 자료**
 - 근로계약서
 - 취업규칙
 - 단체협약서

진정·고소

방법

- ▶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제기(원칙)

처리절차



참고사항

-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
 - * 반의사불벌 취하의 경우 사업주의 처벌은 하지 않으며, 추후 재신고(진정, 고소·고발)불가
-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("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" 참조)

체불임금 소송

무료로 도와드립니다.

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이란

- ▶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

대상근로자

-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(국내거주 외국인 포함)

이용방법

-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법률구조신청(본안소송, 보전·강제 집행 등)

관할법원

- ▶ 민사소송은 아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(선택적 소제기 가능)

- 신청인(근로자)의 주민등록상 주소지
- 사업주 주소지
 -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: 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
 - 사업주가 개인인 경우 : 사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사무소·영업소가 있는 곳

이용절차



- 체불사건 접수(지방고용노동관서)
- ↓
- 체불금품 조사
- ↓
- 체불금품 확정
- ↓
- 체불금품확인원 발급
- ↓
- 무료법률구조신청(대한법률구조공단)

구비서류

- **공동 구비서류**
 - 체불금품확인원 2부, 신분증(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중 하나), 도장
 - * 체불금품확인원은 체불관련 신고를 한 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에서 발급(민원인이 원할 경우 우편 송부)
- **사업주가 법인인 경우**
 - 법인등기부등본 1부(가압류, 강제집행 시 각 1부 추가)
- **가압류가 필요한 경우**
 - 부동산 가압류 : 부동산등기부등본(토지, 건물) 각 1부
 - 자동차 가압류 : 자동차등록원부 1부
 - 채권가압류(예금채권, 공사대금채권,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) : 사업주 주소지(또는 영업장소)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, 제3채무자 인적사항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,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
 - 유체동산 가압류 : 사업주 주소지(또는 영업장소)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
 - * 법인등기부등본,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인터넷 발급신청 시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으로 신청

One-Stop

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면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→ 무료법률구조 상담·신청을 일괄 지원

*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따라 주 1회 월 2회(2·4주), 월 1회(2주) 운영 또는 운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바람

소액사건심판제도

방법

- ▶ 관할 지방법원·지원, 시·군법원에 제기
 - 소송비용이 저렴함
 - 대부분 1회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

대상 및 절차

- ▶ **대상**
 - 소송가액이 2,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
- ▶ **절차**
 - 소장(구술, 서면)이 접수되면, 2주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권고 결정을 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

관할법원

- ▶ 민사소송은 아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(선택적 소제기 가능)
 -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
 - 사업주 주소지
 -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: 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
 - 사업주가 개인인 경우 : 사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사무소·영업소가 있는 곳



뒷면에 계속 이어집니다 →